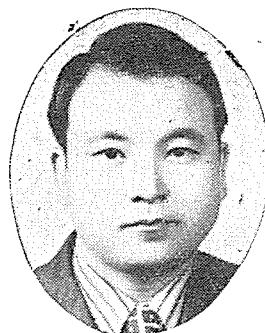


# 技術導入相談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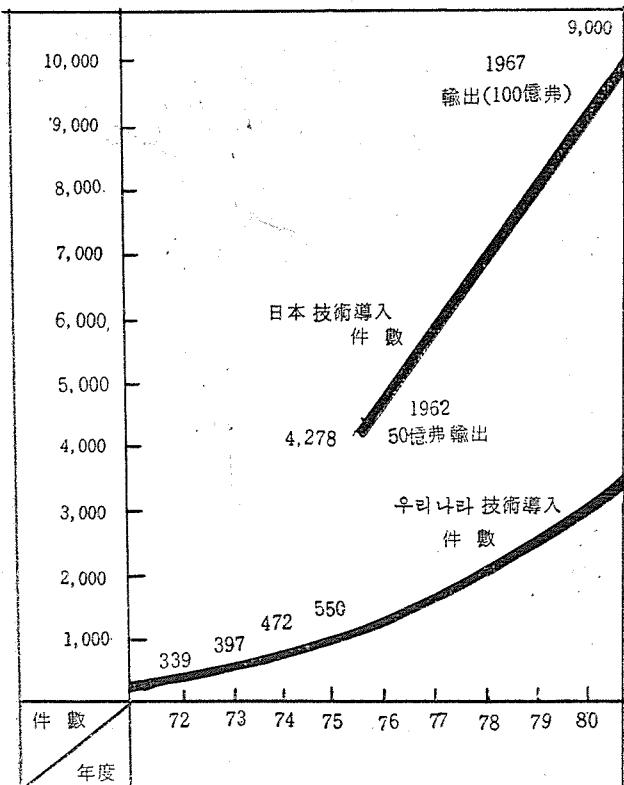
技術導入 諮問, 指導, 幹旋  
事後管理 消化 改良 促進

政府는 매년 增加하고 있는 技術導入과 이 隨伴되는 問題點을 解決하고 企業體의 技術導入을 效率的으로 支援하기 위하여 KIST(韓國科學技術研究所)內에 技術導入相談 센터를 1976年 2月 10日부터 設立하였다.

同센터의 設立 및 運營의 目的是 導入技術의 適正性과 技術의 代價 및 期間의 妥當性을 事前에 檢討하여, 適正技術을 適正한 代價로 確定하여 導入하여 活用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이미 導入된 技術에 對하여서도 事後管理를 철저히 實施하여 技術導入의 效率化를 기하는 데 있다 하겠다.



기술도입 상담센터  
박 한 응 박사



## 1. 同센터의 事業內容 및 利點

- 가. 技術導入에 關한 諮問, 指導 및 幹旋으로서 技術導入先의 選定, 適正技術 및 代價의 決定, 技術導入契約書의 作成 委託에 關해서 企業體를 指導 및 幹旋하며,
- 나. 技術導入의 妥當性 事前檢討로서 契約書上의 不利한 契約條項을 排除하여 條件附 認可를 줄이고,
- 다. 中小企業을 위한 共同技術導入의 推進으로 同種業體間에 同一技術의 導入을 幹旋도록 하고,
- 라. 技術情報의 蓄積, 分析 및 評價로 企業體에 各種 技術 및 經濟情報資料를 提供하고, 國際間의 情報流通體制를 確立도록 하며,
- 마. 導入技術의 消化, 改良 業究를 遂行할 研究所의 幹旋 및 同研究課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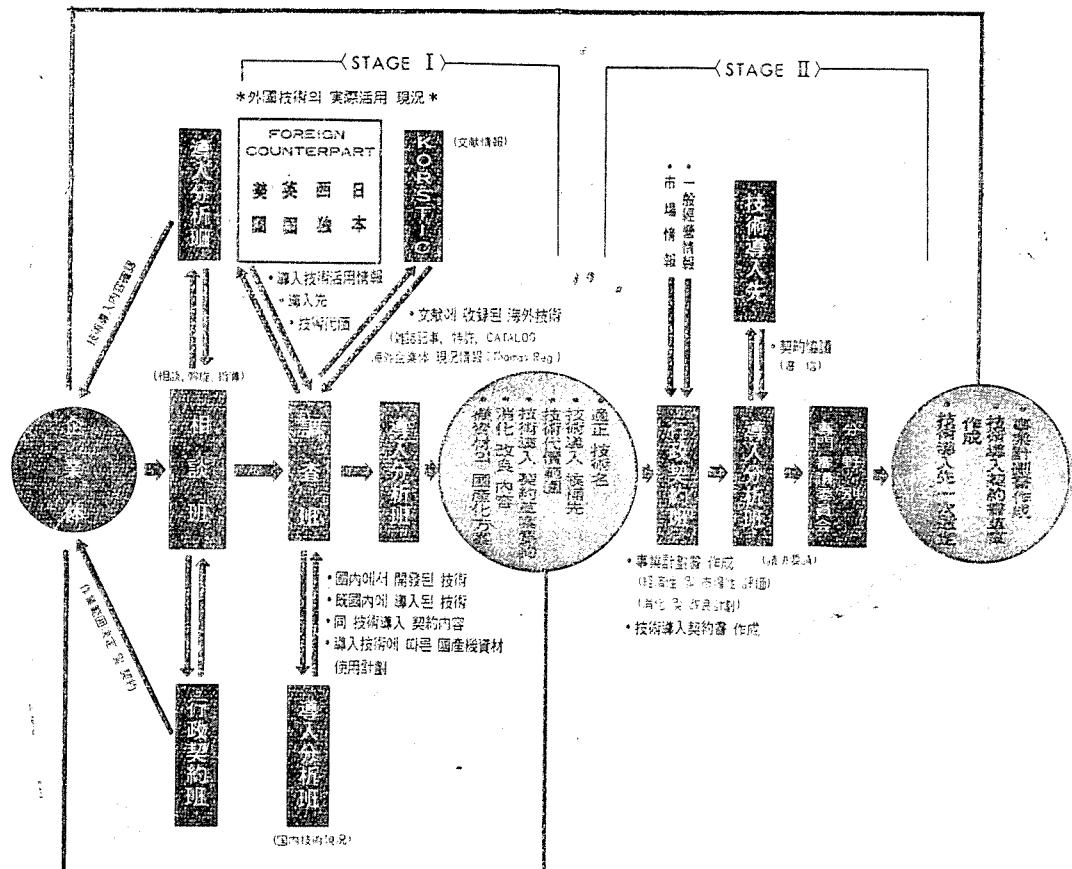
委託斗 技術導入業體의 技術者 및 技能工의 訓練斡旋도 暱하며,

바. 導入技術의 週期的 實態調查의 實施로 効率的인 技術導入政策方向을 提示하는 것을 동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業務를 遂行함으로써 企業體는

기술導入準備期間의 短縮 및 經費節減이 이루어 질 것이며, 迅速正確한 技術導入情報의入手로 適正技術을 導入하게 되고, 不利한 契約條件을排除케 되며, 同시에 導入技術의 効率的인 事後管理 및 消化改良促進에도 利點이 크다 하겠다.

## 2. 技術導入相談節次 및 處理過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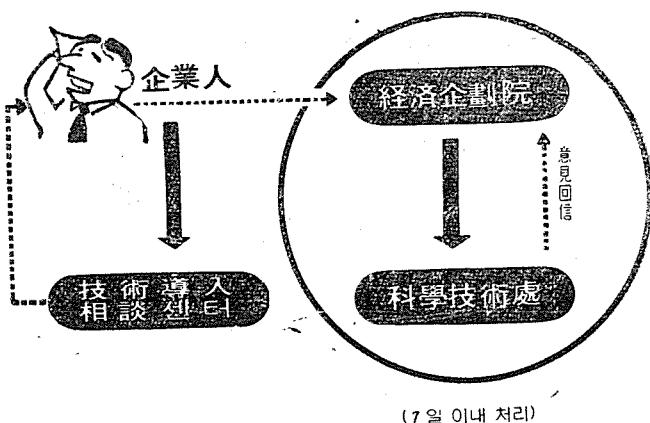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企業體에서 技術導入에 關한 相談을 하자 하면 우선 同센터의 相談班을 방문하여 計劃하고 있는 事業內容 및 導入技術 等을 協議한 다음 行政契約班에서 作業範圍決定 및 契約을 하므로서 일단 行政上の 節次는 모두 끝나게 된다.

契約이 체결되면 同센터의 調查班에서 外國의

FOREIGN COUNTER PART로 하여금 外國技術의 實際活用現況을 調査케 함과 同시에 文獻에 收錄된 海外技術을 KORSTIC으로 하여금 調査하고, 또한 導入分析班에서는 國內에서 開發된 技術, 既目內에 導入된 技術, 同技術導入契約內容 等을 참고로 하여 同센터는 適正技術名, 技術導入候補先, 技術導入代價範圍, 技術導

入契約草案要約, 消化改良內容 및  
機資材의 國產化方案等을 企業體에  
게 提示하게 된다. 이상이 제 1 단계  
(STAGE I)로 볼 수 있으며, 제 2  
단계(STAGE II)는 企業體에서 더  
나아가 契約協議까지 의뢰하면 同센  
터 行政契約班에서 市場 및 一般經營  
情報를 請查하여 事業計劃調查 및 技  
術導入契約書를 作成하게 되며 技術  
導入先과의 實質的인 契約協議까지도  
代行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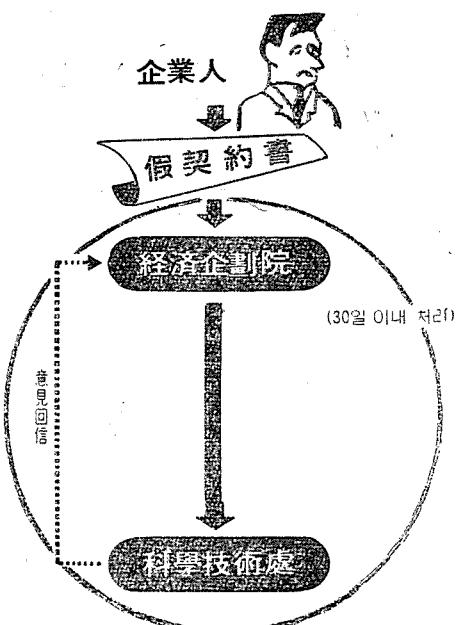


그리하여 最終的인 技術導入先의  
一次選定 및 技術導入契約書草案을  
企業體에게 提示하게 된다.

**B** [事前検討, 外資導入法施行令 第 5 條 第 4 項]

### 3. 技術導入檢討節次

또한 技術導入檢討節次에 있어서  
위 그림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現在 企業體에  
서 技術導入을 政府에 申請코자 할 때 假契約書  
를 經濟企劃院에 提出하면 經濟企劃院에서는 科  
學技術處에 意見조회를 하게 되고 科學技術處는  
다시 해당 전문기관에 再意見 조회를 하여 그  
結果를 經濟企劃院에 回信하게 되므로 많은 경  
과시일과 조건부인가가 따르게 됨으로 이려한  
점을 改善, 보완키 위하여 그림 B에서와 같이  
企業人이 직접 同센터에서 技術導入內容을 事前  
檢討받은 뒤 經濟企劃院에게 申請케 되면 經濟  
企劃院에서는 일단 科技處에 意見조회케 되나  
이미 事前檢討가 완료된 것이므로 즉시 7일이내  
意見回信케 되어 있어(外資導入法 施行令 第 5 條  
第 4 項) 企業體로 보아서는 매우 편리하고 신속  
한 制度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이의 同센터 이  
용절차는 前項 技術導入相談節次에 준하여 行할  
수 있는 것이다.



**A** [事後検討, 外資導入法施行令 第 5 條 第 2 項]

앞으로 工業의 成長과 함께 많은 先進技術을  
導入케 될 것이므로 企業人 여러분의 편의에 최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